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799

발의연월일: 2022. 12. 8.

발 의 자:최기상·강민정·기동민

김남국 · 김성환 · 김영배

박상혁 • 박찬대 • 이동주

임호선 · 허종식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초지방자 치단체의 장 등이 동원명령, 대피명령, 위험구역의 설정, 강제대피조 치, 통행제한, 인력·장비·자재 등의 응원(應援), 응급부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(제39조부터 제45조까지).

이에 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'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·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'와 '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'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(제46조).

하지만 이는 촌각을 다투는 재난 현장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데에 제한이 될 소지가 있으며, 특히

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위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음.

참고로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15조는 서울 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서울시장)의 기능으로 재난의 상황관 리 및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 등의 응 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제45조에서는 "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재 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 령,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"고 규정하여 조례상 재난 규 모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 게 현행법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 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제1항). 법률 제 호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46조(시・도지사가 실시하는   | 제46조(시・도지사가 실시하는  |
| 응급조치 등) ① 시 · 도지사는 | 응급조치 등) ① 시·도지사는  |
|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9조  |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   |
| 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   |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|
| 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.    |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른 |
|                    |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.     |
| 1.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  |                   |
|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    |                   |
| <u>는 경우</u>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2.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  |                   |
| 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   |                   |
| <u>우려가 있는 경우</u>   |                 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|